

##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이란 향후 추가 보유 계획”을 “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(동일인이 「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한다.

제29조의3제1항제5호 중 “제공된 재산상”을 “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”으로, “제공된 경우”를 “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경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경우(중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)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 제공되  
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경  
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